

별첨 1

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(1차)

2015. 6. 17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 . 추진경과 및 여건	1
II . 향후 추진 방향	3
III . 세부 추진 방안	4
1.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	4
2. 원·하청 상생협력 지원	7
3.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	10
4. 통상임금·근로시간 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	12
5.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	12
IV . 추진일정	13

I. 추진경과 및 여건

- (그간의 경과) 청년 고용절벽, 장년 고용불안, 격차문제 해결을 통해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

- ① OECD 평균(50%)에 비해 낮은 청년 고용률(40%),
취업을 위해 휴학하는 청년들이 7년 전에 비해 1.8배 증가
 - 장년은 정년 이전에 퇴직(사규상 평균정년 58세, 실제퇴직 53세)하고 재취업시 임금은 장기근속자의 1/3 수준에 불과
- ② 정년 60세 의무화 + 연공급 임금체계 ⇒ 장년고용 불안, 청년 고용절벽 심화 우려
 - 통상임금·근로시간 관련 현장 혼란과 부당해고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(노동위원회 구제신청건수 '14년 1.2만건) 지속
- ③ 대-중소기업, 정규직-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·복지격차 심화
⇒ 노동시장 활력 부진, 청년이 갈만한 중소기업 일자리 부족

-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·방향에 대한 기본합의*('14.12.23) 이후 100여 차례 논의를 통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했으나,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**

* 우선과제(노동시장 이중구조, 임금·근로시간·정년 등 현안, 사회안전망 정비)는 '15.3월까지 논의 마무리

**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관련 기준·절차 명확화 외 과제는 의견 접근 (노사정위원회 4.9. 논의초안 공개)

- 논의과정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, 노사정간 다수 개혁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미

- (현장 동향) '16년 60세 정년 의무화(300인 이상, 공공기관)를 앞두고 노사 간 이해 대립, 사업장별 임금체계 여건 상이 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미진하나, 최근 대기업 중심 확산 움직임

* 임금피크제 도입률(%): ('12) 9.6 → ('14) 9.9

* 규모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('14): (1~4인) 5.3%, (5~9인) 9.9%, (10~29인) 14.2%, (30~99인) 14.7%, (100~299인) 15.2%, (300인 이상) 23.2%

- ☞ 「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효과분석 결과」 (총 7,571개소, 고용부, 3.19)
 - 도입 사업장의 퇴직자수는 미도입 사업장의 40% 수준에 불과, 고용 안정성이 더 높음
 - 도입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30세 미만 청년층을 16% 추가 고용

□ (고용동향) 지난해 높은 고용증가에 따른 **기저효과**, 경기여건 등에 따라 **고용증가세가 다소 둔화**

- * '15.1~5월 평균 15세 이상 취업자 33.1만명 증가('14년 연평균 53.3만명 증가)
- * '15.5월 고용률(15~64세)은 66.1%로 전년동월 대비 0.5%p 증가

○ 5월 청년실업률은 9.3%로 2000년 이후 5월 기준 최고치

- 구조적 요인에 더해 단기적으로는 경기상황, 노동시장 불확실성 (정년, 통상임금 부담 등)이 신규채용 부진 원인으로 보임

○ '15.3월 비정규직 규모는 601.2만명(전체 임금근로자 중 32.0%)으로서, 전년대비 규모는 늘고(+10.1만명), 비중은 감소(△0.1%p)

- * △정규직-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격차: 12%(전년대비 0.8%p ↑, 기타 인적속성 통제값)
- △사회보험 가입률: 37.9~45.2%(정규직은 82.0~84.7%)
- △근속기간: 2년 5개월(정규직은 7년 3개월)

- 정규/비정규직 및 원청·대기업/하청·중소기업간 격차 심화

<규모별·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수준>

2013년		2014년	
대기업	중소기업	대기업	중소기업
정규직= 100	정규직 53.8	정규직= 100	정규직 52.3
비정규직 65.6	비정규직 36.7	비정규직 64.2	비정규직 34.6

- ☞ 고용상황,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
현장 노사관계의 안정과 함께 현세대와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
노동시장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

Ⅱ. 향후 추진 방향

- 사회적 대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노사정 기본합의(14.12.23) 및 대타협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

<노동시장 개혁 추진 기본방향>

- (기본원칙) 미래세대 고려, 비정규직·구직자 등 국민전체 이익 반영, 노사정은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분담
- (추진방향) ①공감대 형성 과제 → 후속조치 추진
②기본방향 공감, 구체적 방안 추가논의 과제 → 사안별 회의체 논의 후 추진
③법 집행 필요 과제(최종 이견 과제) →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 추진
- (주요내용) ①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+ 청년대책 → 청년 고용질벽 해소
②불확실성 해소 + 상생고용협약 확산 → 원활한 임단협 지원
③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 구축 + 사회안전망 강화 → 노동이동성 제고

- [1차] 임금·단체교섭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 ⇒ **1차 추진방안 발표(6.17)**

* △ 청·장년 간 상생고용, △ 원·하청 상생협력, △ 정규·비정규직 상생촉진, △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, △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

- [2차]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률 등 조치 필요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이전에 방안 마련

* △ 기간제·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
△ 채용-평가-보상-능력개발-배치전환-계약해지 등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
△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및 효율화

- 노사정간 구체적 방안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(산재보험, 근로시간, 최저임금 등 제도 개선)는 연말까지 구체화

⇒ **2차 추진방안 발표(8~9월 중)**

- 현장에서부터의 자율적 개혁을 확산시키고,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노·사 등 각계 의견 수렴 및 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확보

- 지역별·그룹별·주요사업장별 협력선언 및 상생고용 실천운동 전개

* 22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공동협력 선언,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 71개소
* 롯데그룹 창조 노사문화 실천 선언(5.21), SK 하이닉스 사회적책임 실천 협약(6.16)

-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 노력 지속

Ⅲ. 세부 추진 방안

1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

- ❖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+ 청년 고용 촉진
→ 청년(고용절벽 완화)과 중·장년(고용안정) 상생고용

①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여력 확보

- **(공공기관 선도)**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(現 56개소 → 전체 316개소) 및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여 민간부문 확산 촉진

- **(임금피크제)**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('15.5월)을 토대로 기관별 제도 설계, 신규채용 목표 설정(16~17년간 총 6,700명), 경영평가 반영, 성공사례 발굴·확산 등 전 공공기관 도입 목표로 추진

- ✓ [기재부·주무부처] 기관별 추진계획('15.6월), 별도정원 확정, 경영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('15.8월)
- ✓ [고용부·주무부처] 가이드북 마련('15.6월), 선도기관 발굴·도입지원('15.6~8월), 우수사례 발굴·확산(연중), 컨설팅·교육 제공(연중)

- **(임금체계 개편)**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 확대

- ✓ [기재부]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마련('15년 중 마련, '16년 시행)

- **(민간부문 확산)** 관련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규모별·업종별로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지원

- **(선도업종 지원)** 정년 60+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임금피크제 선도 필요성과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

* 조선·금융·제약·자동차·도소매 등 6개 업종에 모델 개발·적용 및 성과 공유

- ✓ [고용부] 정년 60+ 서포터즈 운영·지원(연중)

- **(집중지도) 30대 기업 집단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(551개소)**
중심으로 현장지도 및 컨설팅 등 지원, 협력업체 등 타기업으로 전파

√ [고용부]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지도, 컨설팅 지원,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지원(연중)

- **(사례 확산) 장년 고용안정 및 청년 신규채용 관련 우수사례 발굴,**
사례집 발간·발표대회 개최 등 활성화

√ [고용부] 우수사례 발굴·확산(연중)

- **(지원 제도 개선) 정년 60세 실질적 안착 지원을 위해 임금피크제**
지원금* 한시적 연장, 근로시간 단축형**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

* 現 '15년까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가능('16년 60세 정년제 도입 기업 기준)

** 現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+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+ 임금이 30% 이상 낮아진 경우 → 낮아진 임금에 대해 年 500만원 한도(최대 5년) 지원

√ [고용부] 임금피크제 등 지원금 개편 방안 검토 및 예산반영 추진('15.9월)

- **(금융기관 선도) 임금피크제 도입 등 금융권 임금체계 개선 확산**
독려

√ [금융위·금감원] 임금피크제 도입 등 금융권 임금체계 개선 확산 독려(연중)

- **(불확실성 해소) 정년 60세 의무화와 임금체계 개편의 안정적**
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**취업규칙 변경 절차·기준 명확화**

- 「고령자고용촉진법」·「근로기준법」의 취지와 판례를 토대로 노사,
전문가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체계 관련 불이익 여부,
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* 정리

*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 여부,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기준(근로자의 불이익 정도, 변경 필요성, 변경 내용의 상당성,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경위) 등을 구체화

→ 법 적용 및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, 노사간 성실 협의 촉진

√ [고용부]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('15년)

②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·추진

- **(취업지원) 집중취업지원기간을 설정(5.26~7.31)해** 구인기업 집중개척, 특성별 취업지원, 대학·지자체·유관기관과 지역별 일자리모델 발굴

√ [고용부] 집중취업지원기간 운영('15.5~7월)

- **(시급한 분야 대책 추진) 취업난이 심각한 인문계 전공자***를 위한 취업촉진 방안, 효율적 **해외취업 강화 방안**** 등 마련·추진

* 인문계 전공자 대상 소프트웨어 등 기술교육, 대학 취업지원 역량 강화 등

** 성과높은 사업 중심으로 효율화, 해외취업포털·해외구인수요 개척 등 수요자 중심으로 해외취업시스템 강화

√ [관계부처] 인문계 전공자 취업지원 방안 마련('15.6월), 해외취업 강화 방안 마련('15.7월)

- **(종합대책 마련) 정년 60세 시행 등에 따른 고용절벽 우려에 대응**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**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**」 마련

- **(단기 고용절벽 대응)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마련** 등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고 **분야별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**

<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(안) >

지원대상	임금피크제 도입 + 청년 신규채용한 모든 사업장
지원내용	임금피크제 적용 장년 근로자 + 신규채용 청년 1쌍 당 연 1,080만원(대기업·공공기관은 540만원)을 2년간 지원
지원기한	3년간 한시적 지원 → 신속한 청년고용 창출 유도

- **(청년고용 지원사업 개선) 청년일자리 사업(13개 부처 53개 사업, 1.5조)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사·중복평가 및 개편 추진**

- **(인력 미스매치 해소)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개편** 등을 통해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유도하고, **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추진**

√ [관계부처]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('15.7월)

- **(협의체) 노사 참여 「청년고용대책협의회」** 구성(5월),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지속 모색

√ [고용부] 청년고용대책협의회 구성·운영('15.5월~)

- ❖ 원·하청 상생협력 + 공정거래 정착 →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,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·세제 지원 강화 및 제도개선

1 원청의 하청기업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노력 유도

- **(상생협력기금)**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에 출연시 세제지원(출연금의 7% 세액공제)

* 하청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관련 상생공유 모델을 개발, 대·중소기업협력 재단이 세제지원 대상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조치

✓ [산업부] 하청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성과공유모델 개발('15.11월), 세제지원('16년~)

- **(근로복지기금)** 원청이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, 하청기업·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경우 세제* 및 재정지원**

* 공동근로복지기금·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법인세 손비 인정,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

**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 하청업체 근로자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검토('15년 80억원)

✓ [고용부]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적근거 마련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('15.6월), '16년 시행

✓ [기재부]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, 세제지원('16년~)

- **(평가 반영)** 원청의 하청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

*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에 근로조건 개선 관련 설문항목 추가 또는 가점항목 반영

✓ [산업부·동반위]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 개선('15.9월)

- **(상생협력 촉진)** 상생협력 우수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및 R&D사업 사업자 선정시 가점부여 등 우대

✓ [중기청] R&D 사업자 선정 관련 지침 및 정책자금 관련 지침 개정('15.12월)

② 원·하청간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

- **(하청기업 협상력 강화)** 촉박한 신청기한으로 인해 조정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기조합 납품단가 조정신청* 기한 연장(7→20일)

* 중기조합이 하청기업을 대신해 원청과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

✓ [공정위]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('15.6월)

- **(하도급대금)**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관행 정착을 위한 장치 강화

- 하도급대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수급사업자*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,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**

*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해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(위반시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 부과)

** 의류(3월), 선박(4월), 자동차·건설(5월), 기계업종(6월 예정) 등 대금미지급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중

✓ [공정위]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처리 협의('15.6월)

- 상생결제시스템*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활용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, 하청기업이 활용시 세제지원 추진 검토**

* 대기업·1차 협력사로부터 2·3차 하청기업으로 원활한 자금흐름 유도를 위해 대기업 발행 결제채권을 협력사가 주요은행을 통해 현금처럼 유통하는 시스템

** 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 결과('15.7월)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추진 검토

✓ [기재부] 세제지원 검토 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('15.12월)

✓ [산업부·동반위] 동반성장지수 가점항목에 반영('15.9월)

- **(불공정관행 개선)**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원활한 제보여건을 조성하고 적발시 제재 강화

- 보복우려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**대리제보센터**를 **확대***하고, 전경련·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**익명제보시스템**** **활성화**를 위한 **홍보·교육 확대**

* 불공정하도급 사례를 중기협동조합이 파악하여 공정위에 대신 제보(現 금형 등 15개 업종 중기조합에 설치 → 유통·SW 분야까지 확대)

** 온라인으로 인적사항 입력없이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

- 불공정행위 적발시 **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기간 연장** (3→6개월)

✓ [공정위] 대리제보센터 확대('15년 중) 및 익명제보시스템 활성화(연중)

✓ [기재부]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('15.12월)

- **(자율개선)** 공정거래협약체결 미진 업종(가맹·광고)에 대한 **협약 체결을 장려·확산**하고 **하도급 분쟁조정* 대상범위 확대****를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유도

* 건설·용역 등의 하도급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원·수급사업자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 도모

** 분쟁조정 대상기준 원사업자의 매출액 규모를 상향조정하거나, 대금지급 지연 등 사적 분쟁 성격이 강한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 등

✓ [공정위]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('15.10월)

③ 공공조달 분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

- **(공공조달)** 덤핑수주로 근로조건·공사품질을 악화시키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**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** 시행하고, 낙찰자 선정시 **청년고용창출 기여 및 동반성장 실적 우대**

- '16년부터 공사부문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, 공사분야 시행 결과를 토대로 **물품·용역 분야 낙찰자 선정시(적격심사제도)에도 동반성장·청년고용 관련 평가항목 도입 추진**

✓ [기재부] 공사부문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('15.11월)

✓ [조달청] 종합심사낙찰제 등 관련 지침 개정('15.12월)

❖ 정규직-비정규직 상생 촉진을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

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추진

- **(가이드라인 마련)** 기간제·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·개정
 - **(기간제)** 상시·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규정 및 정규직 전환시 준수 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
 - * <전환업무> 상시·지속적 업무(연중 계속 업무, 과거 2년간 및 향후 지속 예상 업무)
 - <대상자 선정> 공정한 대상자 평가·선정 및 전환기준·방법 등 공지
 - <근로조건> 기간제 근무기간·업무경험 반영
 - <불합리 차별금지> 비교대상 근로자 없더라도 복리후생 차별 금지, 능력개발 기회 부여 등
 - **(사내하도급)**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원청의 동종·유사업무 근로자와 동등 수준 처우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
 - **(특수형태업무종사자)** 서면계약 의무화 및 부당계약해지 제한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기본적 종사여건 보호 및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
 - * △서면계약 체결·교부, △계약 변경·갱신·해지 기준·절차, △계약갱신·해지 예고 및 절차, 부당계약변경·해지 제한, △보수 지급시기·방식, 보수지급내용 열람, 고충처리 등

✓ [고용부]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('15.6월),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('15.8월)

- **(현장지도)**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(300개소) 대상, 기간제·단시간·파견 근로자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지도·점검 실시

✓ [고용부]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('15.5~6월)

- **(정규직 전환 지원)**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장려를 위한 지원금* 본격 지원, 추진실적 등 감안하여 활성화 방안 검토

* 정규직 전환 후 임금상승분의 50%(60만원 한도) 1년간 지원

✓ [고용부]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(연중)

②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

- **(정규직 전환 유도)**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부문의 고용구조 개선 선도

* 비정규직의 정원 내 정규직 전환 등 2단계 전환 계획 마련, 비정규직 규모를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

✓ [고용부]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 마련('15년 하반기)

- **(용역근로자)** 시중노임단가 준수·근로조건 보호 포함 등을 위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의 합리성 제고 및 이행 강화*

* 「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」('12.1월) 이행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(경영평가 포함) 반영 추진

✓ [산업부]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이행실적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반영('15년 반영, '16년 시행) → 경영평가 반영(기재부)

✓ [고용부]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이행 실태조사(매년)

✓ [관계부처]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수정·보완('15.12월)

③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확립

- **(입법추진)**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자 보호 강화

- **(임금체불)** 체불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* 및 지원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

*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 부과,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여, 지연이자제 적용 확대 등(국회 상임위 계류 중)

- **(최저임금)**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(국회 상임위 계류 중)

✓ [고용부]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국회 통과 추진('15.6월),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개정('15.6월)

- **(분위기 확산)** 3대 기초고용질서(서면근로계약, 임금체불, 최저임금) 준수 유도를 위한 민·관 공동캠페인 및 일제 점검(4천개소)

✓ [고용부] 3대 기초고용질서 관련 일제 점검('15.5월~6월, 하반기)

4

통상임금·근로시간 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

- **(법안 처리 노력)**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을 토대로 노사정 의견 접근 내용*을 반영하여 통상임금·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총력

< 노사정 의견 접근 사항 >

① 통상임금

- (개념정의)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
- (제외금품)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거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 제외 (구체적 유형은 시행령 위임)

② 근로시간

-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, 규모별 4단계 시행
- 특별연장근로는 사유(주문량 급증 등)·절차(노사대표 서면합의)·상한(1주 8시간) 설정, 최종 시행단계 후 4년간 한시적 허용
- 근로시간 특례 업종 축소(26 → 10개), 남은 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등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은 '15년 말까지 마련
-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(2주 → 1개월, 3개월 → 6개월),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

√ [고용부] 근로기준법 개정안(환노위 계류 중) 국회 통과 노력('15.6월)

5

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

- **(관행 개선)** 노동시장 개혁의 현장 안착을 위한 위법·불합리한 노사 관행* 개선 지속 추진

* 勞: 불법 파업, 고용세습, 인사·경영권의 본질 침해 행위

社: 부당노동행위, 열정페이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, 과도한 하도급 확대 및 불공정거래 행위

√ [고용부] 노사관행 개선을 위한 지도·감독 및 자율개선 지원(연중)

- **(사회적 대화)** 노사정간 추가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,

- 논의의제 및 참여주체 확대* 등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추진, 사업장·지역단위 노사 대표성 강화 방안 검토

* 전국단위 노사단체 이외에 청년, 비정규직, 중소기업, 소상공인 대표 등 참여

√ [고용부]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 국회 조기 통과 노력('15년)

IV. 추진일정

추진과제	추진일정	소관부처
1.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		
①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여력 확보		
① 공공기관의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 및 성과주의 확산		
[임금피크제 도입]		
▪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	'15.6월	기재부, 주무부처
▪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가이드북 배포	'15.6월	고용부
▪ 선도기관 발굴·도입 지원	'15.6~8월	고용부
▪ 별도정원 확정	'15.8월	기재부
▪ 경영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	'15.8월	기재부
▪ 우수사례 발굴·확산, 컨설팅·교육 제공	연중	고용부, 주무부처
[임금체계 개편] ▪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마련	'15년	기재부
② 민간부문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확산		
▪ 60+ 서포터즈 운영,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·지도, 컨설팅 지원,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	연중	고용부
▪ 우수사례 발굴·확산	연중	고용부
▪ 임금피크제 등 지원금 개편 방안 검토 및 예산반영 추진	'15.9월	고용부
▪ 임금피크제 도입 등 금융권 임금체계 개선 확산 독려	연중	금융위·금감원
③ 취업규칙 변경 절차·기준 명확화		
▪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	'15년	고용부
②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·추진		
① [취업지원] 집중취업지원기간 운영	'15.5~7월	고용부
② [시급한 분야 대책 추진]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, 해외취업 강화 방안 마련	'15.6월·7월	고용부
③ [종합대책 마련] 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 마련	'15.7월	관계부처
④ [협의체] 청년고용대책협의회 구성·운영	'15.5월~	고용부

추진과제	추진일정	소관부처
2. 원.하청 상생협력 지원		
① 원청의 하청기업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노력 유도		
① [상생협력기금] 하청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성과공유모델 개발	'15.11월	산업부
② [근로복지기금]		
▪ 공동근로복지기금 근거 마련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	'15.6월	고용부
▪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	'16년	기재부
③ [평가반영]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 개선	'15.9월	산업부·동반위
④ [상생협력촉진]		
▪ R&D 사업자 선정 관련 지침 및 정책자금 관련 지침 개정	'15.12월	중기청
② 원하청간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		
① [하청기업 협상력 강화]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	'15.6월	공정위
② [하도급 대금]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지급관행 정착		
▪ 하도급법 국회 처리 협의	'15.6월	공정위
▪ 세제지원 검토 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	'15.12월	기재부
▪ 동반성장지수 가점항목에 반영	'15.9월	산업부·동반위
③ [불공정관행 개선]		
▪ 대리제보센터 확대	'15년	공정위
▪ 익명제보시스템 활성화	연중	공정위
▪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	'15.12월	기재부
④ [자율개선]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	'15.10월	공정위
③ 공공조달 분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		
▪ 공공부문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	'15.11월	기재부
▪ 종합심사낙찰제 등 관련 지침 개정	'15.12월	조달청

추진과제	추진일정	소관부처
3.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		
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추진		
① [가이드라인 마련]		
▪ 기간제,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·개정	'15.6월	고용부
▪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	'15.8월	고용부
② [지도점검]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·점검	'15.5~6월	고용부
③ [정규직 전환 지원]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	연중	고용부
②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		
① [정규직 전환 유도]		
▪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계획 마련	'15년 하반기	고용부·기재부 등 관계부처
② [용역근로자 보호]		
▪ 실태조사 실시	매년	고용부
▪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수정·보완	'15.12월	관계부처
▪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반영(경영평가에도 포함)	'15년	산업부
③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확립		
① [입법추진]		
▪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	'15.6월	고용부
▪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	'15.6월	고용부
▪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	'15.6월	고용부
② [분위기 확산] 3대 기초고용질서 관련 일제 점검	'15.5월~6월 하반기	고용부
4. 통상임금·근로시간 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		
▪ 통상임금·근로시간 단축 입법 추진	'15.6월	고용부
5.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위 제도 개선		
① [관행 개선] 노사관행 개선을 위한 지도·감독 및 자율개선 지원	연중	고용부
② [사회적 대화]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 국회 조기 통과 노력	'15년	고용부